#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영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14

발의연월일: 2025. 4. 25.

발 의 자:신영대・임광현・임오경

안호영 · 홍기원 · 이학영

김기표 • 박수현 • 강선우

박지원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은 사학연금 적용대상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. 반면, 동일한 사립학교 내 교원의 경우 2020년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개정을 통해 국·공립 교원 수준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.

그러나 사무직원에게는 유사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, 학교 내 동일한 근로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. 사학연금 공단 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 중 직원의 육아 휴직 사용비율은 1%에도 미치지 않으며, 교원에 비해 직원의 사용 비율이 두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미비로 인해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됨.

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가 휴

직을 명하도록 하고, 육아휴직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함(안 제70조의8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0조의8(사무직원의 육아휴직) ① 사무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사무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휴직을 원하면 그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휴직하는 사무직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70조의8(사무직원의 육아휴직)
	① 사무직원이 만 8세 이하 또
	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
	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
	거나 여성 사무직원이 임신 또
	는 출산하게 된 경우 휴직을
	원하면 그 사무직원의 임용권
	<u>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</u>
	② 제1항에 따라 휴직하는 사
	무직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
	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	<u>로 정한다.</u>